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의 기준 제시 및
환경피해준비금 근거 마련 등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요율 산출원칙과 실태조사 결 과 등 반영,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마련 등	3
IV. 참고자료	9
1. 환경책임보험 개요	9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2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요율 산출원칙과 실태 조사 결과 등 반영,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기초서류의 제출·변경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현행	개정안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제출·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u> <u>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u> <u>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u> <u>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u>

현행	개정안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u>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u> <u>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 ----- ----- 1. ~ 6. (현행과 같음) 7. <u>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u> 8. (현행 제7호와 같음)

[표] 개정안 부칙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준비금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으로 본다.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보험요율의 결과를 따르고 있으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요율 산정 체계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보험자가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¹⁾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²⁾이나 농어업재해보험³⁾과 같이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요율 산정 시 보험요율 산출원칙⁴⁾과 실태조사 결과⁵⁾ 등을 반영하여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험료의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
1. ~ 2. <생 략>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4)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 5)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환경책임보험 개요

□ 도입 배경

- 구미 불산사고("12.9), 여수 GS칼텍스 유류유출사고("14.1) 등 대형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의 필요성 대두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14.12) 시,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16.7 시행)

* 임의보험은 일부만 가입, 보험료 증가, 보험사 인수 거부 등 실효성 저하 우려로 미채택

□ 보상체계

- **(보장 범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제3자 배상책임, 점진적·급진적 포함)

※ 오염자 책임원칙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 **(보장 한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30 ~ 300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장

* 시설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하고, 보장금액 및 배상책임한도 차등

- **(배상책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시설 종류에 따라 500 ~ 2,000억원까지 부담

< 보장한도 및 배상책임한도 >

금액 구분	국 가 (구제계정)		국 가 (구제계정)
	사업자	사업자	
배상책임한도 2,000억 (가군 기준) 나군 1,000억 다군 500억	보험사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국 가 (구제계정)
보험 보장한도 300억 (가군 기준) 나군 100억/80억 다군 50억/30억			
	보험 가입 사업자	보험 미가입 사업자	원인 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

□ 의무가입 대상 및 현황

- **(가입 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약 14만개 사업장)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약 1.5만개 사업장)

< 상세 의무가입 시설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 ▷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대기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
- ▷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수질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 ▷ (폐기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 (토양) 저장용량 1천kℓ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 ▷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주요 취급시설
- ▷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오염물질 저장시설 합계 용량 300kℓ 이상

- **(가입 현황)** 15,759개 대상 사업장 중 **98.9%**인 **15,582개소** 가입('25.5월)
- **(총보험료)** 환경책임보험 시행 첫해('16)보다 매년 가입 사업장은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인하 등으로 오히려 **총보험료는 감소 추세**

< 총보험료 변화 추이 >

